

낙농제도개선 건의안

낙농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현욱 : 서울대 교수, 한국낙농학회 회장)는 지난 1월~5월간 마련한 낙농제도개선안을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 낙농업은 우루과이 리운드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의한 유제품 수입자유화로 수입유제품에 의하여 국내 시장이 크게 잠식당하고 특히 작년 10월에 빛어진 우유위생 논쟁이후 소비자들이 우유에 대한 불신이 기증되면서 우유소 비가 격감되고 분유제고가 누적되어 낙농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낙농학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낙농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1)소비자에게 더 좋은 우유를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목장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우유의 질과 위생수준을 높여나가고, (2)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낙농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동안 낙농가들의 관심사항으로 이를 게재하니 많은 참고 바랍니다.

(편집자 주)

낙농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

- 낙농진흥법을 개정하여 집유를 일원화하고 독립적인 낙농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구에서 수급조절, 가격결정, 분쟁조정, 제도연구, 국제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등 모든 정책사항들을 의결 집행한다.

- 원유에 대한 검사공영화를 실시하고, 원유 및 유제품에 잔류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국제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전 성시험에 의하여 얻어진 안전 허용량을 기준으로 채택하고, 검사와 검사방법은 개량 TTC 방법과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을 함께 채택하여 검사기준과 방법을 함께 채택하여 검사기준과 방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 위생적 유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체세포 등급제를 실시하고 기준등급을 년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성분적 유가체계 설정에 있어서 등급간 가격차등은 높은 등급의 원유에 유리하게 하여, 유가체계 개선에 의하여 유질개선을 유도하여 나간다.

-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실시하여 분유등 가공용으로 사용된 원유의 가격을 조정하여 가공품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서 악성 분유재고 발생문제를 구조적으로 제거한다.

- 식품공전상의 유가공품 분류방법을 개선하여 국산 원유사용 우유 및 유제품과 수입 유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의 명칭이 차별 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용기에 표시토록 한다.

- 우유 광고의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광고를 유도하고 허위, 과대, 비방광고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한다.

· 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나아가며 필요자금은 낙농가와 유업체가 공동 부담한다.

·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낙농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구입비 융자지원, 이전자금의 지원조건 개선, 양도소득세, 구입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등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낙농기술연구 및 지도를 강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하여 낙농기술연구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낙농제도개선 건의안 요약

1. 더 좋은 우유 공급대책

가) 낙농가 지도강화, 원유검사, 위생관리제도, 위생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

· 낙농가 지도지침 표준화를 위한 권장작업 방법 제시

- 유방염 예방관리계획 수립

- 목장의 환경위생에 대한 위생등급 부여

-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체계 조속 마련

· 성분적 유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현지방을 등차체계 조정과 유지방의 단백질 및 무지고형분을 유대지급 요소에 반영 · 위생적 유질 개선

- 세포수 등급제 조기시행

- 연차적인 기준 등급 상향 조정

- 저온성세균, 내열성세균, 염소계 소독제 잔류검사 등을 일정주기 실시 의무화 및 처분기준 마련 등

나) 원유·유제품 유해물질 잔류허용한계 설정 및 검사방법 개선

· 항균성 잔류물질의 검사 강화

- 원유 및 유제품에 잔류되어 있는 항균성 물질의 허용기준은 국제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 시험에 의하여 얻어진 안전허용량을 기준으로 채택

- 검사와 검사방법은 수의과학연구소가 연구한 개량TTC방법과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을 함께 채택하여 합리적 간격(예·월 2회 등)으로 검사함으로써 한국에서 생산된 유제품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항균성약제이외의 유해 잔류물질(농약, 중금속, 소독제,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잔류모니터링 실시로 잔류실태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잔류 허용한계 설정

다)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지침 설정

· 수의약품심의기구 설치

- 동물용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 안전사용 계도, 규제와 감시기능

· 유방염 전용약제의 허약기간 재검토

라) 검사공영화 실시

· 검사기구는 독립시키고 검사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마) 축산물위생처리법 대폭 보완 또는 우유품질 및 위생관리 전담법 제정

2. 유가체계 개선에 의하여 고품질 원유생산과 유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유도

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실시

- 시유로 사용된 원유의 가격은 높게, 가공용으로 사용된 원유의 가격은 낮게 책정하여 가공품에 대한 대외경쟁력을 제고

- 유가결정체계 변동에 따른 생산농가의 년간 소득에는 불이익이 없게 조정

나) 성분 및 위생등급에 따른 유가체계 개선

· 시유중심 고품질의 원유생산 농가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유가체계 개선

제

도

미

정

책

-현행 유지방 가격차는 줄이고 유단백질, 무지고형분 등을 가격결정 요인에 추가

· 성분 및 위생등급에 의한 가격차를 고급원유에 누진적으로 유리하게(또는 저급원유에 누진적으로 불리하게) 차등 적용

3. 우유·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

· 집유 일원화

-집유주체는 생산자단체로 함.

-집유지역은 광역화하여 가고, 도단위이상의 경제적 권역별로 집유함.

· 원유 등급별 구분집유

-등외원유 생산농가에 대한 목장환경 및 위생관리 강화

-등외판정농가에 대해 집유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대체 용도로 사용 검토

· 시유시장의 권역별 통합 유도

-권역별 유제품 물류센터 운영

-시유시장의 권역별 유제품 종합물류배송 센터의 유업체 공동운영

· 콜드체인 유통 시스템 확립

-우유·유제품의 배달, 소매, 보관, 진열, 판매시까지 섭씨5도의 상태유지 의무화

-대리점의 적정 규모화와 개설 위생조건 강화

-영세배달원과 소매상인들에 대한 냉장장비의 구입자금 지원

-유통업자·일반소비자에 대한 우유·유제품의 위생 관리요령 교육·홍보

· 유제품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지침을 표준화

4. 소비자 교육, 보호 및 홍보대책

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표기 기준의 강화

· 우유 및 유제품의 “영양표시(Nutrition

Labelling)” 제도 도입

-우유 및 유제품의 외포장에 영양사항 표시의 의무화

-식생활 지침등의 표시를 권장하여 국민식생활 개선 유도

· 국산원유사용 우유·유제품에 대한 제품명칭 차별과 포장 표시 방법

-국산 원유와 외국산 유제품으로 생산된 제품의 차별화와 표시상 혼란 제거

· 신선유·신선유제품: 법정 검사에 합격한 신선한 1급 원유를 국제적으로 인정 표준 살균법(저온 장시간 살균: 63°C에서 30분, 또는 고온 단시간 살균: 72°C에서 15초)으로 살균하고 균질하여 제조된 우유를 신선유(新鮮乳 Fresh Milk)라고 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유제품을 신선유제품(新鮮乳製品, Fresh Milk Products)이라고 하여 차별화함.

· 기타: 멸균신선유, 신선크림, 신선발효유, 신선연유, 신선분유, 신선치즈, 신선아이스크림

-품명 표시

· 위 정의에 합당한 제품은 상표와 같은 크기의 활자로 포장에 표시

· 수입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유제품은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상품표시 활자의 반 정도 크기로 표시

-식품공전상 유가공품 분류방법 개선 및 표시 관련규정 개정 필요

나) 원유 및 우유 검사 성적의 공표제도 도입

· 우유의 품질 및 안전성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월별(또는 분기별)로 원유와 시유의 검사 성적 공표

-검사 성적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 추진

- 다)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 도입
 ·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반영, 정부나 소비자 단체가 추진
 라) 자조금제도 도입 홍보자금 마련
 · 우유 마시는 것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
 · 소비 홍보 및 관련 연구에 소요 자금은 낙농가와 유업체 공동부담
 마) 우유·유제품의 공동홍보대책 기구 구성과 소비홍보 체계 확립
 · 우유·유제품 공동홍보위원회(가칭)의 구성·운영
 바) 우유 광고의 사전 심의제 도입
 - 사전에 심의하여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광고 유도
 - 학계, 소비자단체, 업계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사) 학교우유급식 체계 개선
 · 학교우유급식은 우유에 대한 기초 영양식 품의 위치 정착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차원에서 확대 추진
 아) 과대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 식품위생법상의 우유·유제품의 허위나 과대·비방광고 경쟁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과감한 조치 단행
5. 낙농여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목장이전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강화
- 가) 3년이상 납유실적이 있는 목장의 이전비 지원
 나) 3년이상 납유실적이 있는 목장 이전시 농지구입비 융자 지원
 다) 이전자금의 지원 조건 개선
 라) 양도소득세, 구입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전액 면제
6.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및 관세체계 개선
-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확대 적용
- 배합사료, 단미사료, 조사료, TMR사료, 기자재
 나) 조사료 수입관세를 MMA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하향 조정
 다) 혼합원료 유제품에 대한 관세체계 개선
 · 혼합원료 유제품에 대한 관세를 분유류와 버터의 관세율로 운영하고 HS분류를 12-16단위로 별도 분류
 - 학교급식용은 무관세, 사료용은 저율관세, 일반소비용은 관세화 세율 부과
 · 50%이상의 유제품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해당 유제품의 관세율로 분류

7. 조사료의 안정적 공급대책

- 가) 휴경지 조사료단지화 사업 확대 실시
 나) 초지조성 및 사료포 조성에 따른 각종 법적 제약 완화
 다) 조사료 공급기지 설치

8. 독립적인 낙농전문기구 설치

- 의결 및 집행기구 설립
 - 이 기구는 수급조절, 가격결정, 분쟁조정, 제도연구, 국제여건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 등 모든 정책문제를 조사·연구·결정함.
 - 이 기구의 이사회는 생산자와 유업체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구성·운영함

9. 낙농기술 전담기구(가칭 : 낙농기술진흥원) 설치

- 축산기술연구소에 낙농기술연구전담기구를 두어 낙농기술연구를 강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및 지도, 검정·정보, 가축질병·위생 관리 기능 등